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국방위원회 】

2017.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차 례

# CONTENTS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8
- 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 11

#### II. 주요 현안 분석 / 12

-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의 전 부처 차원 파악 필요 ..... 12
- 2. 전력유지비의 체계적 사업관리 및 효율적 집행 노력 필요 ..... 15
- 3. 군인복지기금 학자금계정·전세대부계정 지출 분석 ..... 17
  - 3-1.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준치 여부 검토 필요 ..... 17
  - 3-2.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 확보 노력 필요 ..... 19
- 4. 사업관리를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적정화 노력 필요 ..... 22
- 5.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진흥비 지급계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 25

#### III. 개별 사업 분석 / 34

- 1. 몰수금 과다계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필요 ..... 34
- 2. 신규 소규모어린이집 사업관리 노력 필요 ..... 36
- 3. 군 경력자의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필요 ..... 39



# CONTENTS

4. 주재무관이 아닌 미국 국방정보국 파견인원 관련 예산 이관 필요 .....	42
5. 의무시설개선 신규사업 설계비 예산 조정 필요 .....	45
6. 증/특식 사업과 무관한 민간위탁배송 사업 이관 필요 .....	48
7. 전공심화과정 시작 전 시스템 개발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노력 필요 .....	50
8.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관련 웨어러블 기기 필요성 검토 필요 .....	52
9.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 공사비의 적정수준 반영 필요 .....	55
10. 유사사업 집행부진을 고려한 사업관리 노력 필요 .....	57
11. 국군외상센터 공사비 연부율과 다르게 적용된 감리비 조정 필요 .....	60
12.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기술협력 사업 수행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62
13.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65
14.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	67

## [ 방위사업청 ] / 73

### [ 병무청 ]

#### I. 예산안 개요 / 133

1. 현 황 .....	13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	134
3. 예산안 주요 특징 .....	135



## II. 주요 현안 분석 / 136

1. 입영 후 귀가인원 증가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136
2. 병적관리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138

## III. 개별 사업 분석 / 140

1. 국외체재인원 실태조사의 사업효과성 개선 필요 ..... 140
2. 대체복무제도 관련 국외출장 사업 이관 필요 ..... 144

# 국방위원회







국방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1조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억원(2.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709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127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075억원, 군인복지기금 3,741억원, 군인연금기금 6,200억원이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05,216	618,718	618,718	691,037	72,319	11.7
- 일반회계	133,604	152,826	152,826	170,872	18,046	11.8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181,816	161,847	161,847	112,685	△49,162	△30.4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88,668	259,405	259,405	407,480	148,075	57.1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01,128	44,640	44,640	0	△44,640	△100.0
기 금	940,391	618,718	618,718	691,037	72,319	11.7
- 군인복지기금	363,801	430,642	430,642	374,122	△56,520	△13.1
- 군인연금기금	576,590	590,495	590,495	619,962	29,467	5.0
합 계	1,545,607	1,639,675	1,639,675	1,685,121	45,446	2.8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국방부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31조 3,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66억원(5.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6조 8,173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432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972억원, 군인복지기금 5,736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2,111억원이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5,028,269	26,039,606	26,039,606	27,557,705	1,518,099	5.8
- 일반회계	24,209,708	25,422,165	25,422,165	26,817,334	1,395,169	5.5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30,041	335,002	335,002	343,220	8,218	2.5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53,943	282,439	282,439	397,151	114,712	40.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4,577	0	0	0	0	0.0
기 금	3,453,384	3,646,151	3,646,151	3,784,662	138,511	3.8
- 군인복지기금	496,752	574,196	574,196	573,556	△640	△0.1
- 군인연금기금	2,956,632	3,071,955	3,071,955	3,211,106	131,151	4.5
합 계	28,481,653	29,685,757	29,685,757	31,342,367	1,656,610	5.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국방부

##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3,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8억원(4.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371억원에서 2018년 2,456억원으로 3.6% 증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7,378억원에서 5,704억원으로 22.7% 감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2017년 3,056억원에서 2018년 5,669억원으로 8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5,030	237,060	237,060	245,631	8,571	3.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37,069	737,755	737,755	570,366	△167,389	△22.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68,290	305,643	305,643	566,893	261,250	85.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1,128	44,640	44,640	0	△44,640	△100.0
합계	1,361,517	1,325,098	1,325,098	1,382,890	57,792	4.4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0조 7,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14억원 (5.5%)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8조 1,377억원에서 2018년 29조 6,352억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7,378억원에서 5,704억원으로 22.7% 감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3,056억원에서 5,669억원으로 8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790,784	28,137,698	28,137,698	29,635,188	1,497,490	5.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66,724	737,755	737,755	570,366	△167,389	△22.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8,943	305,643	305,643	566,893	261,250	85.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4,577	0	0	0	0	0.0
합계	27,821,028	29,181,096	29,181,096	30,772,447	1,591,351	5.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국방부 소관 2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4조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7억원(4.2%)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은 2017년 1조 3,182억원에서 2018년 1조 3,724억원으로 4.1% 증가하였으며, 군인연금기금은 2017년 3조 1,451억원에서 2018년 3조 2,776억원으로 4.2%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방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인복지기금	1,270,153	1,318,187	1,318,187	1,372,409	54,222	4.1
군인연금기금	3,029,973	3,145,114	3,145,114	3,277,605	132,491	4.2
합계	4,300,126	4,463,301	4,463,301	4,650,014	186,713	4.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2018년도 국방부 소관 2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4조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7억원(4.2%)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은 2017년 1조 3,182억원에서 2018년 1조 3,724억원으로 4.1% 증가하였으며, 군인연금기금은 2017년 3조 1,451억원에서 2018년 3조 2,776억원으로 4.2%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방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인복지기금	1,270,153	1,318,187	1,318,187	1,372,409	54,222	4.1
군인연금기금	3,029,973	3,145,114	3,145,114	3,277,605	132,491	4.2
합계	4,300,126	4,463,301	4,463,301	4,650,014	186,713	4.2

주: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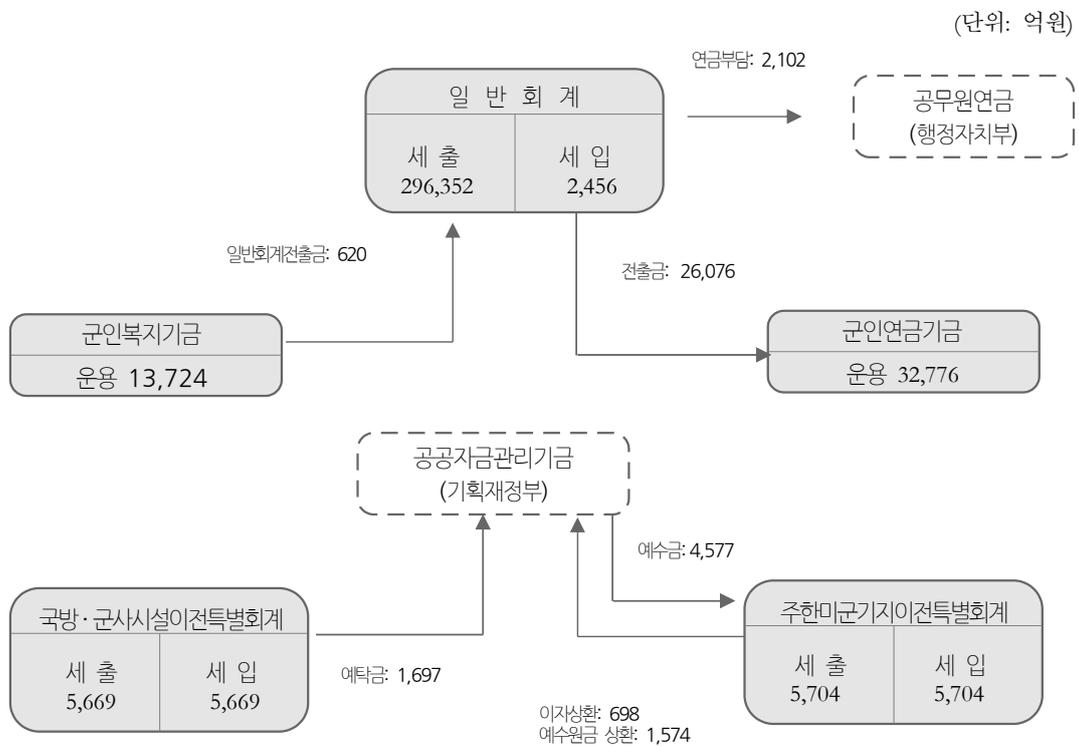
자료: 국방부

## 라. 재정구조

2018년도 국방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6,076억원 전출되었고, 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20억원 전출되었으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697억원 예탁하였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1,574억원 및 예수이자 698억원을 상환하였고, 동 기금에서 4,577억원을 예수하였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이며 21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민군기술협력(R&D)사업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수성포대이전사업, 부대개편 3차 사업, 부사관학교훈련장 이전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개)	민군기술협력(R&D)	3,55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3개)	수성포대 이전사업	862
	부대개편 3차 사업	16,606
	부사관학교훈련장 이전	740
합 계		21,767

자료: 국방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병인건비, ② 부사관인건비, ③ 항공장비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인건비는 국정과제인 병봉급 인상소요가 반영되었고,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반영되었다.

[국방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34개)	장교인건비	4,209,234	4,209,234	4,301,320	92,086	2.2
	부사관인건비	5,070,910	5,070,910	5,301,640	230,730	4.6
	병인건비	1,047,205	1,047,205	1,814,040	766,835	73.2
	군무원인건비	1,604,604	1,604,604	1,641,300	36,696	2.3
	건강보험부담금	278,483	278,483	290,458	11,975	4.3
	기본급식	1,467,570	1,467,570	1,481,489	13,919	0.9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증/특식	107,428	107,428	125,308	17,880	16.6
	의무시설개선	6,697	6,697	9,581	2,884	43.1
	보건복지지원	2,487	2,487	4,609	2,122	85.3
	기동장비	145,987	145,987	175,433	29,446	20.2
	기동장비	671,134	671,134	750,464	79,330	11.8
	화력장비	122,631	122,631	136,785	14,154	11.5
	항공장비	1,094,492	1,094,492	1,199,664	105,172	9.6
	특수장비	248,388	248,388	260,233	11,845	4.8
	장비연료	426,776	426,776	480,051	53,275	12.5
	수송활동	105,114	105,114	119,364	14,250	13.6
	관사및간부숙소	130,483	130,483	166,499	36,016	27.6
	155미리 교체시설	11,683	11,683	16,000	4,317	37.0
	공군 활주로 재포장	4,748	4,748	30,200	25,452	536.1
	작전지휘부 시설교체(강릉기지)	1,077	1,077	7,045	5,968	554.1
	시설정책지원	4,664	4,664	6,337	1,673	35.9
	시설유지관리	489,615	489,615	573,774	84,159	17.2
	공공요금	423,691	423,691	445,133	21,442	5.1
	해군1함대정비대대 기본경비	73	73	95	22	30.1
	해군2함대정비대대 기본경비	76	76	99	23	30.3
	해군3함대정비대대 기본경비	42	42	68	26	61.9
	공군종합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1,045	1,045	1,370	325	31.1
	육군종합보급창 기본경비	258	258	455	197	76.4
	육군종합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3,022	3,022	4,029	1,007	33.3
	군사시설개선	409,739	409,739	444,231	34,492	8.4
	국방행사지원	14,579	14,579	22,765	8,186	56.1
	군배상금	102,636	102,636	142,212	39,576	38.6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2,504,619	2,504,619	2,607,643	103,024	4.1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의 전출금	136,112	136,112	210,211	74,099	54.4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2개)	평택지원	18,220	18,220	41,300	23,080	126.7
	기타이전지원	19,345	19,345	28,739	9,394	48.6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14개)	1군지사이전	28,304	28,304	49,399	21,095	74.5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749	749	5,529	4,780	638.2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2,402	2,402	12,448	10,046	418.2
	행정지원 및 기타	10,124	10,124	14,397	4,273	42.2
	37사단 110연대 3/4대대	183	183	2,079	1,896	1,036.1
	17사단 101연대	4,612	4,612	8,054	3,442	74.6
	21화생방대대 이전사업	230	230	4,123	3,893	1,692.6
	남양대대	811	811	7,283	6,472	798.0
	국군외상센터 건립	2,194	2,194	7,230	5,036	229.5
	56사단 공병/포병대대	223	223	4,030	3,807	1,707.2
	지작사 창설	6,275	6,275	13,379	7,104	113.2
	육군 부대개편 2차	16,067	16,067	123,369	107,302	667.8
	군특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 예탁금	23,204	23,204	169,742	146,538	631.5
	군인복지 기금 (6개)	복지시설운영	275,575	275,575	292,578	17,003
복지시설확보		50,520	50,520	71,135	20,615	40.8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14,543	14,543	23,883	9,340	64.2
전세대부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전출		30,000	30,000	52,000	22,000	73.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40,326	340,326	422,927	82,601	24.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8,354	48,354	68,900	20,546	42.5
군인연금 기금 (2개)	퇴직급여	2,703,366	2,703,366	2,824,860	121,494	4.5
	퇴직수당	259,205	259,205	275,379	16,174	6.2
합 계		24,702,134	24,702,134	27,292,668	2,590,534	9.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 발휘 보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2017년 대비 5.6% 증가한 31조 3,424억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특징은 ①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②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③ 전투력 발휘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고, ④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방부는 2018년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7,668억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병에 국한된 것이며, 사회복지요원·의무소방대원 등의 봉급 인상분 1,347억원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병 이외의 소요 재원까지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력유지비 중 군수지원및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건설및운영 프로그램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체계적인 사업관리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인복지기금 중 학자금대부 사업은 학자금계정의 핵심사업이나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정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 간부의 전세자금마련과 관련된 사업이 원금대부에서 이차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차지원은 자본을 잠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평택기지이전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반영하여 주한미군기지지전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중 447억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의 전 부처 차원 파악 필요

가. 현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26일 2018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병장 기준 21만 6,000원 → 40만 5,700원)하는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40% 수준,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17년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는 경우 병장 기준 2020년에는 54만 892원, 2022년에는 67만 6,115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첫 해인 2018년 병 인건비<sup>1)</sup>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7,668억 3,500만원(73.2%) 증가한 1조 8,14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병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 인건비	945,214	1,047,205	1,047,205	1,814,040	766,835	73.2
병 기본급여	885,092	977,763	977,763	1,715,171	737,408	75.4
특수업무수당	29,971	33,828	33,828	33,117	△711	△2.1
상근예비역 기본급여	30,151	35,614	35,614	65,752	30,138	84.6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n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01-153

##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8년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7,668억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병에 국한된 것으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봉급이 인상되는 사회복지요원,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무관후보생(사관후보생·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관련 재정소요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25,280명 추산) 봉급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봉급 인상에 따라 각 부처에서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의무소방대원(1,100명 추산)과 의무경찰(20,730명 추산)의 봉급도 각각 소방청과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봉급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무관후보생(사관후보생 980명, 사관생도 3,530명 및 ROTC 10,020명 추산)과 부사관후보생(2,720명 추산)의 봉급도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622억원, 의무소방대원 44억원, 의무경찰 489억원, 무관후보생 130억원, 부사관후보생 62억원 등 총 1,347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병 이외의 추가 재정 소요]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B-A)
사회복지요원	25,280	650	1,272	622
의무소방대원	1,100	155	199	44
의무경찰	20,730	610	1,099	489
무관후보생	14,530	263	393	130
부사관후보생	2,720	70	132	62
총계	64,360	1,750	3,097	1,347

주: 각각의 인원 수는 부처별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따라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요원, 의무소방대원 등의 봉급 인상분까지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재정 관리 차원에서 국방부가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 부처의 재정 소요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4,975억원(5.3%) 증가한 29조 6,352억원이다. 이는 병력운영비<sup>1)</sup>와 전력유지비<sup>2)</sup>로 구분되는데, 전력유지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97억원 증가한 11조 2,210억원이다.

[2018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력운영비	162,536	171,464	171,464	184,142	12,678	7.4
전력유지비	105,377	109,913	109,913	112,210	2,297	2.1
총계	267,913	281,377	281,377	296,352	14,975	5.3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전력유지비 중 군수지원및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건설및운영 프로그램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노력을 통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력유지비는 군수지원및협력,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국방정보화,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군인사및교육훈련 등 9개 프로그램<sup>3)</s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군수지원및협력과 군사시설건설및운영은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 피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2) 교육훈련, 시설 건설·유지, 장비 유지, 장비 획득, 예비 전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3) 군수지원및협력, 군사시설건설및운영, 국방정보화, 장병보건및복지향상, 군인사및교육훈련,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2016년의 경우 전력유지비는 4,792억원의 이월액과 4,92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중 군수지원및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건설및운영 프로그램에서 각각 5,744억원과 1,567억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6년도 국방부 전력유지비 집행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 액(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전력유지비	107,525	115,092	105,372	4,792	4,928	98.0	91.6
군수지원및협력	46,021	47,932	42,188	2,258	3,486	91.7	88.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6,567	27,730	26,162	1,087	480	98.5	94.3

주: 전력유지비 내에는 총 9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군수지원및협력 사업과 군사시설건설및운영 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가장 많은 상황임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업체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장비도입 지연과 설계·시공 발주 후 사업기간 부족, 입찰방식 변경,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연료비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 실시 전 정확한 소요 확인 및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실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학자금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군인복지기금 지출계획안은 전년 대비 542억 2,200만원 증가한 1조 3,72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군인복지기금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인복지기금	1,270,153	1,318,187	1,318,187	1,372,409	54,222	4.1
복지계정	521,675	669,993	669,993	652,088	△17,905	△2.7
학자금계정	83,602	111,325	111,325	104,011	△7,314	△6.6
전세대부계정	664,876	536,869	536,869	616,310	79,441	14.8

자료: 국방부

### 3-1.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존치 여부 검토 필요

#### 가. 현 황

학자금계정의 지출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대부를 위한 것으로 학자금 대부, 일반회계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3억 1,400만원(△6.6%) 감소한 1,040억 1,100만원이다.<sup>1)</sup>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학자금계정의 수입은 학자금 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 예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학자금계정 지출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학자금계정	83,602	111,325	111,325	104,011	△7,314	△6.6
학자금대부	30,752	30,971	30,971	25,111	△5,860	△18.9
일반회계전출금	21,426	32,000	32,000	10,000	△22,000	△68.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1,289	48,354	48,354	68,900	20,546	42.5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학자금대부 사업은 학자금계정의 핵심 사업이나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대부<sup>2)</sup>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부액과 대부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장학금 등의 증가, 학생 수 감소 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8년의 경우 추가 감소가 예상되어 학자금대부 사업 계획안이 전년 대비 58억 6,000만원(△18.9%) 감소한 25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자금 대부액 및 대부인원 현황(2015~2018년(안))]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추정)	2018년(안)
전체 대부액	34,404	30,751	30,971	25,111
대부인원	11,022	9,925	9,876	8,201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학자금대부 사업의 계획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8년 학자금대부 사업이 학자금 계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지출의 2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학자금 계정 지출액의 약 75%가 학자금대부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일반회계전출금 및 비통화기관예치금)에 집행되고 있다.

2) 코드: 군인복지기금 2241-649

[전체 계정지출액 대비 학자금대부 사업 지출액 비중(2015~2018년(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계획)	2018년(안)
전체 계정 지출액(A)	76,321	83,602	111,325	104,011
학자금대부(B)	34,404	30,751	30,971	25,111
비중(B/A)	45.1	36.8	27.8	24.1

주: 2016년까지는 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계획액 기준

자료: 국방부

따라서 향후 대부인원의 추가 감소 예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자금 계정을 군인복지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 확보 노력 필요

#### 가. 현 황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sup>3)</sup> 사업은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하고 있는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의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38억 8,300만원이다.

[2018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6,119	14,543	14,543	23,883	9,340	64.2

자료: 국방부

군 간부에게 전세자금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8년에는 기존 3,347세대와 신규 2,422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이자 지원될 예정이다.<sup>4)</sup>

3) 코드: 군인복지기금 2200-648

4) 대부단가는 1억 3,800만원이며, 3%의 이자율(국방부 협약금리)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 산출 내역]

구분	수준
대상	기존소요: 3,347세대
	신규소요: 2,422세대
대부단가	1억 3,800만원
이자율	3%
2018년 계획안	238억 8,300만원(5,769세대 × 1억 3,800만원 × 3%)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군 간부의 전세자금 마련과 관련된 사업이 원금대부에서 이자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자 지원은 자본을 잠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수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이후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자 지원의 경우 2016년까지 60억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고, 원금대부의 경우도 1,000억원 수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군 간부의 전세자금 관련 사업이 원금대부에서 이자 지원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이자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원금대부는 축소되고 있다.

[이자 지원 및 원금대부 현황(2014~2018년(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년	2016년	2017년(계획)	2018년(안)
이자 지원	1,744	5,282	6,119	14,543	23,883
원금대부	139,467	91,648	107,204	52,000	17,50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향후 주거지원정책방향을 원금대부방식에서 이자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자, 2017년부터 재정규모가 큰 원금대부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자지원은 원금대부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지출 규모가 작지만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은 2015년 1억 300만원, 2016년 8,500만원, 2017년 7월말 기준 1억 7,500만원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원금대부 축소에 따른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거나 전출이 예정되어 있어(2017년 300억원, 2018년 520억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가. 현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sup>1)</sup>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2006년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7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누적 잔액은 2조 6,421억원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sup>2)</sup>은 2016년 726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361억원, 2018년 1,574억원 등 2024년까지 상환될 예정이며, 해당 재원은 기존 주한미군부대 시설 및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안)
예수금	13,619	5,697	5,433	5,759	4,577
상환	-	-	726	3,361	1,574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sup>3)</sup>에서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반영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대구·김천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49개 구역으로 통·폐합 이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 코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94-943

3) 평택기지이전사업은 2005년부터 수행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2억 7,400만원 감액된 2,525억 1,000만원이다.

되도록 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평택기지이전사업<sup>4)</sup>은 용산에 위치한 9개 미군기지<sup>5)</sup>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4개의 미군기지<sup>6)</sup>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인데, 2012년 이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평택기지이전사업 예산 집행 현황(2012년~2017년 7월)]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2	209,545	121,248	0	221,793	115,835	55.3	52.2	44,815	61,143
2013	316,184	44,815	0	360,999	294,927	93.3	81.7	41,161	24,911
2014	500,980	41,161	0	542,141	420,589	84.0	77.6	85,712	35,840
2015	587,459	85,712	△15,000	658,171	543,673	92.5	82.6	99,258	15,241
2016	454,310	99,258	±6,393	553,568	426,946	94.0	77.1	88,526	38,096
2017.7	271,784	88,526	-	360,310	141,100	51.9	39.2	-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국 측과의 합의가 필요하여 일정부분 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공사업체의 사업관리 미숙, 부도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부담도 증가<sup>7)</sup>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중 447억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1-301

5) 베인, 사우스포스트, 501정보대, 유엔사, 수송부, 8군휴양소, 니블로베릭스, 극동공병단, 성남골프장

6) 캠프닐블(동두천), H-220(동두천), 캠프마켓(부평), 캠프김(서울)

7) 2018년 예수금의 예상 이자율은 2.7% 수준이다.

2018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5,703억 6,600만원이며, 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4,576억 8,100만원)과 토지매각대(1,094억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토지대여료	826	1,900	1,900	1,600	△300	△15.8
기타재산수입	956	300	300	500	200	66.7
변상금	7,086	42	42	62	20	47.6
가산금	7	0	0	4	4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5,779	1,354	1,354	1,000	△354	△26.1
기타잡수입	341	51	51	119	68	133.3
토지매각대	166,820	158,200	158,200	109,400	△48,800	△30.8
공자기금예수금	543,300	575,908	575,908	457,681	△118,227	△20.5
총 계	837,069	737,755	737,755	570,366	△167,389	△22.7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18년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액은 1,574억원으로, 동 특별회계의 자체세입(1,127억원)보다 많아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중 447억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주한미군 이주 지연, 환경정화조치 협의 장기화 등으로 토지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토지매각대를 세입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협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등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원 고유사업, 정부대행사업, 수탁용역사업 등의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성과를 보상·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이다.<sup>1)</sup>

국방 분야 연구·용역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sup>2)</sup>(이하 “국방연”), 국방과학연구소<sup>3)</sup>(이하 “국과연”), 국방기술품질원<sup>4)</sup>(이하 “기품원”) 등 3개 기관의 예산에 편성된 연구활동진흥비는 다음과 같다.

국방연 연구활동진흥비는 한국국방연구원(R&D) 사업의 사업비 항목에 2016년 최초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은 20억 1,000만원으로 전년(9억 2,700만원) 대비 117%(10억 8,300만원) 증액되었다. 국과연 연구활동진흥비는 기초연구(R&D), 핵심기술개발(R&D), 민군기술협력(R&D) 등 21개 세부사업(2018년 기준)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일부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 1) 「연구활동성과진흥비 지급 방침」(한국국방연구원 지침)
 

제2조(정의) 연구활동성과진흥비란 연구원의 고유사업, 정부대행사업, 수탁용역사업 등의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성과를 보상·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활동진흥비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연구활동진흥비 지급방침」(국방과학연구소 지침)

제2조(연구활동진흥비 정의) 사업/과제책임자가 사업/과제 직접 참여인력의 성과를 보상·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지침」(국방기술품질원 지침)

제2조(정의) “연구활동진흥비”란 기술기획, 품질경영 등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의 고유사업, 방위사업청의 추가 출연사업, 수탁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벤처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참여한 인력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된 급여 성격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 2)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연구과제의 종료 등으로 2018년 예산안은 총 34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7,600만원(△10.2%) 감소하였다. 기품원의 경우 기술기획(R&D), 품질경영(R&D) 등 2개 세부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예산안은 총 10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900만원(1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국방분야 공공기관의 연구활동진흥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국방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R&D)	39,612	37,506	37,506	41,260	3,754	10.0
	연구활동진흥비	<b>218</b>	<b>927</b>	<b>927</b>	<b>2,010</b>	<b>1,083</b>	<b>116.8</b>
국방과학 연구소	기초연구(R&D)	48,177	48,703	48,703	44,271	△4,432	△9.1
	연구활동진흥비	303	302	302	392	90	29.8
	핵심기술개발(R&D)	257,757	262,545	262,545	270,510	7,965	3.0
	연구활동진흥비	6,791	9,924	9,924	5,825	△4,099	△41.3
	전용기술(R&D)	378,942	428,887	428,887	505,418	76,531	17.8
	연구활동진흥비	11,487	15,078	15,078	16,325	1,247	8.3
	핵심SW개발(R&D)	10,166	10,999	10,999	11,215	216	2.0
	연구활동진흥비	349	392	392	0	△392	△100.0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R&D)	934	500	500	13,263	12,763	2,552.6
	연구활동진흥비	241	75	75	150	75	100.0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35,529	114,055	114,055	93,789	△20,266	△17.8
	연구활동진흥비	1,514	2,420	2,420	2,654	234	9.7
	차기전술유도무기(R&D)	22,936	13,866	13,866	9,653	△4,213	△30.4
	연구활동진흥비	617	598	598	619	21	3.5
	701사업(R&D)	22,863	40,818	40,818	33,018	△7,800	△19.1
	연구활동진흥비	1,127	1,065	1,065	789	△276	△25.9
	군위성통신체계-Ⅱ(R&D)	25,866	16,088	16,088	18,142	2,054	12.8
	연구활동진흥비	740	1,032	1,032	801	△231	△22.4
	소형무장헬기공대자유도탄(R&D)	6,853	8,042	8,042	25,229	17,187	213.7
	연구활동진흥비	724	861	861	944	83	9.6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체계(R&D)	1,617	12,555	12,555	27,700	15,145	120.6	
연구활동진흥비	0	505	505	616	111	22.0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R&D)	3,560	16,944	16,944	32,103	15,159	89.5	
연구활동진흥비	11	661	661	666	5	0.8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보고 III 소나체계(R&D)	25,157	9,635	9,635	8,453	△1,182	△12.3
	연구활동진흥비	482	550	550	577	27	4.9
	장보고 III 전투체계(R&D)	11,582	18,102	18,102	11,095	△7,007	△38.7
	연구활동진흥비	463	419	419	439	20	4.8
	중어뢰- II (R&D)	10,049	6,628	6,628	8,780	2,152	32.5
	연구활동진흥비	602	330	330	298	△32	△9.7
	항만감시체계(R&D)	7,584	26,265	26,265	30,870	4,605	17.5
	연구활동진흥비	260	329	329	373	44	13.4
	425사업(R&D)	0	44,500	44,500	106,816	62,316	140.0
	연구활동진흥비	0	0	0	1,494	1,494	순증
	무인경전투차량(R&D)	0	500	500	9,471	8,971	1,794.2
	연구활동진흥비	0	0	0	757	757	순증
	MUAV(R&D)	71,399	76,819	76,819	331	△76,488	△99.6
	연구활동진흥비	762	342	342	0	△342	△100.0
	군단정찰용 UAV- II (R&D)	25,083	23,025	23,025	440	△22,585	△98.1
	연구활동진흥비	812	500	500	0	△500	△100.0
	전술함대지유도탄(R&D)	4,594	9,243	9,243	0	△9,243	△100.0
	연구활동진흥비	650	335	335	0	△335	△100.0
	철매- II 성능개량(R&D)	18,483	16,820	16,820	0	△16,820	△100.0
	연구활동진흥비	1,216	1,070	1,070	0	△1,070	△100.0
	130mm 유도로켓(R&D)	7,925	9,634	9,634	0	△9,634	△100.0
	연구활동진흥비	557	720	720	0	△720	△100.0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0	0	0	349	349	순증
	연구활동진흥비	0	0	0	75	75	순증
	상륙돌격장갑차-II(R&D)	0	0	0	1,687	1,687	순증
	연구활동진흥비	0	0	0	93	93	순증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R&D)	411	0	0	0	-	-
	연구활동진흥비	0	0	0	0	-	-
	2.75"유도로켓(R&D)	46	0	0	0	-	-
	연구활동진흥비	3	0	0	0	-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R&D)	10,952	0	0	0	-	-
	연구활동진흥비	715	0	0	0	-	-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R&D)	3,978	0	0	0	-	-
	연구활동진흥비	294	0	0	0	-	-
	연구인프라보강(R&D)	136,450	87,016	87,016	76,664	△10,352	△11.9
	연구활동진흥비	109	155	155	140	△15	△9.7
	기술/연구지원(R&D)	72,251	76,861	76,861	82,776	5,915	7.7
	연구활동진흥비	237	299	299	56	△243	△81.3
	<b>연구활동진흥비 합계</b>	<b>31,064</b>	<b>37,960</b>	<b>37,960</b>	<b>34,084</b>	<b>△3,876</b>	<b>△10.2</b>
국방기술 품질원	기술기획(R&D)	24,452	25,087	25,087	25,701	614	2.4
	연구활동진흥비	1,590	1,775	1,775	2,251	476	26.8
	품질경영(R&D)	41,185	38,250	38,250	42,187	3,937	10.3
	연구활동진흥비	6,683	6,918	6,918	7,791	873	12.6
	<b>연구활동진흥비 합계</b>	<b>8,273</b>	<b>8,693</b>	<b>8,693</b>	<b>10,042</b>	<b>1,349</b>	<b>15.5</b>

주: 1.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예산을 포함하였으며, 연구활동진흥비는 2017년 9월 16일까지 승인된 사업의 예산을 기준으로 함(2018년 패키지 및 미승인사업 연구활동진흥비 미포함(사업승인 과정에서 변동가능))  
 2.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R&D) 사업에는 수치차 금액 포함(2017년 5,900백만원, 2018년 7,204백만원)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활동성과진흥비 지급 방침(한국국방연구원 지침)」 등 각 공공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국과연과 기품원은 연구활동진흥비가 인건비의 20% 수준이고, 최근에 연구활동진흥비가 편성·집행되기 시작한 국방연은 7% 수준인데, 향후 타 연구기관 대비 처우개선 및 대외활동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sup>5)</sup>

5)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는 국방정책 연구를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연구원 확보와 안정적 연구여건 마련 및 국방관련 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진흥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연구활동진흥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국방 연구원	연구활동진흥비	218	927	927	2,010	1,083	116.8
	(인건비 대비 연구활동 진흥비 비중)(%)	1.0%	3.5%		7.0%	-	-
국방과학 연구소	연구활동진흥비	31,065	37,960	37,960	34,084	△3,876	△10.2
	(인건비 대비 연구활동 진흥비 비중)(%)	20%	20%		20%	-	-
국방기술 품질원	연구활동진흥비	8,273	8,693	8,693	10,042	1,349	15.5%
	(인건비 대비 연구활동 진흥비 비중)(%)	18%	19%		20%	-	-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방분야 공공기관에 편성·집행된 연구활동진흥비가 연구역량 확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기준으로서 직무가중치 등을 고려하는 것은 성과평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활동진흥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방연·국과연·기품원 지침을 보면, 산정 기준으로서 “개인별 지급계수”를 고려하고 있다. 개인별 지급계수는 연간 연구직접참여율, 개인 평가등급가중치, 직무가중치, 인건비가중치, 사업부서성과평가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각 가중치는 직급, 성과급, 책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급시기는 연중 2회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하거나 연말에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의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기준 현황]

공공기관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
배분기준 (개인별 지급 계수)	연간 참여율 × 개인평 가등급가중치 × 직무가 중치 × 인건비가중치	연간 참여율 × 개인평 가등급가중치 × 직무 가중치 × 인건비가중치	연간 참여율 × 개인평 가등급가중치 × 직무가 중치 × 사업부서 성과 평가가중치
연간 참여율	지급대상 1년(1회) 중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일수		
개인평가 등급가중치	1등급 1.1, 2등급 1.0, 3등급 0.9	1등급 1.3, 2등급 1.15, 3등급 1.0 (책임자일수 특 등급 우대)	1등급 1.3, 2등급 1.15, 3등급 1.0
직무가중치	책임자 1.1, 참여자 1.0	책임자 1.2~ 1.3, 참여 자 1.0	책임자 1.2~ 1.1, 참여 자 1.0
인건비 가중치	직급/호봉에 따라 산정	연봉/성과급에 따라 산정	(해당사항 없음)
사업부서 성과평가 가중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업부서의 성과에 따 라 1.0~1.3
지급시기	5월, 11월(50%씩)	12월	5월, 11월(50%씩)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활동성과진흥비 지급 방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활동진흥비 지급방침」, 국  
방기술품질원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성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기준 상세내용(한국국방연구원 예시)]

$$\text{개인별 지급액} = \text{연구활동진흥비 예산액} \times \frac{\text{개인별 지급계수*}}{\text{개인별 지급계수의 합}}$$

\* 개인별 지급계수 = 연간 연구 직접참여율(A) × 개인평가등급가중치(B)  
× 직무가중치(C) × 인건비가중치(D)

(A) 연간 연구 직접참여율 : 지급대상 1년(1회) 중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일수를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로 나누어 계산

(B) 개인평가등급가중치 : 성과평가방침에 의한 해당 연도 평가결과 중에서 성과평가등급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함(개인 성과평가 등급이 없는 자는 3등급의 평가등급가중치인 0.9를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가 등급	A+, A	B+, B	C
가중치	1.1	1.0	0.9

(C) 직무가중치 : 연구과제/사업의 책임자 및 참여자에 따라 부여(센터(단)장은 책임자로 간주하여 적용)

등 급	책임자	참여자
가중치	1.1	1.0

(D) 인건비가중치 : 개인별 직급/호봉에 의한 기본연봉액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 다만,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직급/호봉에 의한 기본연봉액의 125%를 적용

$$\text{인건비 가중치} = \frac{\text{해당 지급월의 지급대상자 기본연봉월액}}{\text{해당 지급월의 지급대상자 기본연봉월액 합계}}$$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활동성과진흥비 지급 방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기준은 개인의 성과를 업무실적과 가중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급 기준에서 직무가중치를 고려하여 책임자를 우대하거나 인건비가중치를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해당 가중치 기준은 실제 성과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관(또는 부처)은 직무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일반 참여자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연구활동진흥비 예산이 기본적으로 직원 인건비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인건비와 직무 요인은 연구활동진흥비와 별개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성과를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활동진흥비에 해당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활동진흥비가 연구인력의 성과를 보상·장려한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에서 성과측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준과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활동진흥비가 성과상여금과 차별화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3개 공공기관의 직원이 수령하는 연구활동진흥비의 지급 기준으로서 개인평가등급가중치, 사업부서성과평가가중치에서는 「성과평가지침」에 따른 개인·부서성과평정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부서성과평정은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연구활동진흥비 산정의 중요 요소인 연간 연구참여율은 1년을 기준으로 개인의 정량적 산출물인 연구사업참여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는 정량적 과제의 비중을 평가에 반영하는 성과평가기준 결과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활동진흥비가 지급기준에 있어 성과상여금과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활동진흥비와 성과상여금이 유사할수록 연구활동진흥비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한 직원 보수 증가에 비해 인센티브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의 2016년도 연구활동진흥비 집행 실적을 보면, 전체 임직원 중 대부분 연구활동진흥비를 수령받아 전체 인원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과연과 기품원의 경우는 평균 연구활동진흥비가 성과상여금의 70~80%에 달한다. 연구활동진흥비가 성과연봉과 차별성이 낮게 운용될 경우 당초 의도한 인센티브 기능보다는 직원의 전반적 보수 수준만 확대되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내역(2016년 기준)]

(단위: 천원)

기관	임직원수	연구활동진흥비					성과상여금 계
		인원수	집행액	평균	최저금액	최고금액	
국방과학연구소	2,944명	2,271명	30,982,222	13,643	3,916	33,666	15,648
국방기술품질원	737명	615명	8,143,000	13,240	4,960	30,460	19,255
한국국방연구원	435명	311명	217,991	700	388	1,299	21,247

주: 1.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정규직 기타 성과상여금(2016) 금액임

2.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활동진흥비의 경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연구활동진흥비 교부 82백만원 미포함(2016 결산 31,064백만원 = 집행액 30,982백만원 + 교부 82백만원)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기준을 과제 중심, 연구실적 활용도와 같은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상여금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몰수금 과다계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황

몰수금<sup>1)</sup>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가액 등을 군사법원의 판결에 의거 몰수 또는 추징한 금액을 의미하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247.4%) 증가한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몰수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몰수금	26	95	95	330	235	247.4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몰수금은 과거 수납 실적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몰수금의 2013~2016년 평균 수납실적, 평균 증가율(20.9%), 수납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간의 평균 수납실적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국방부가 반영한 3억 3,000만원의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56-562

[몰수금 수납실적 현황(2013~2016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2013	82	82	82	124	33	40.2	26.6	91	0
2014	110	110	110	34	20	18.2	58.8	14	0
2015	187	187	187	112	7	3.7	6.3	105	0
2016	187	187	187	246	26	13.9	10.6	219	0

자료: 국방부

또한, 몰수금 미수납의 주요 원인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현재 미수납된 몰수금의 수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몰수금은 과거 수납 실적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 신규 소규모어린이집 사업관리 노력 필요

### 가. 현황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sup>1)</sup> 사업은 일-가정의 양립과 육아부담 완화 등 군인 및 군 가족들이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7.6%) 증가한 37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32,242	35,134	35,134	37,807	2,673	7.6
소규모어린이집 운영	1,899	1,928	1,928	2,626	698	36.2

자료: 국방부

군 어린이집은 현재 총 117개소가 운영 중인데 규모<sup>2)</sup>에 따라서 일반적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과 소규모어린이집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예정 포함)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신규
어린이집	101	-
소규모어린이집	16	5
공동육아나눔터	22	4
총계	139	9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242-302

2) 소규모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이 중 소규모어린이집은 2018년에 5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2018년 예산안은 설치비 2억 5,000만원과 6개월 운영비 3억 6,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이다.

[2018년도 신규 설치 소규모어린이집 예산안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단가	신규 설치 소규모어린이집	2018년 예산안
초기 환경설치비	50	5	250
초기 운영비	72(6개월분)	5	360
총계	122	5	61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신규 설치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가 6개월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7년까지 설치가 추진된 16곳의 소규모어린이집 개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6개소 중 절반인 10개소가 상반기에 개원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신규설치가 예정된 4개소 모두 12월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다.

[소규모어린이집 개원일 현황]

구분	관할부대	개원일
2011년	1기갑여단	2011년 9월
2012년	8사단	2012년 8월
2013년	30사단	2013년 4월
2014년	21사단	2014년 8월
	28사단	2014년 9월
2015년	2기갑여단	2015년 3월
	9사단	2015년 3월
	9사단	2015년 3월
2016년	30사단	2016년 6월
	1방공여단	2016년 9월
	5기갑여단	2016년 10월
	15비행단	2016년 4월
2017년	1사단	2017년 12월(예정)
	22사단	2017년 12월(예정)
	73사단	2017년 12월(예정)
	항공작전사령부	2017년 12월(예정)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7년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4개소 중 3개소가 장소 변경의 이유로 지체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대개편, 주위 민간어린이집과의 갈등, 설치장소의 변경 등으로 소규모어린이집의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도 국방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은 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운영비 소요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매년 6개월분의 신규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상하였음에도 전체 16개소 중 10개소가 상반기에 개원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준공시기가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준공시기를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신규 소규모어린이집을 적기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방여성정책지원 사업은 성(性) 상담 관련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성고충 상담, 성인지 향상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지원<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4,700만원(187.8%)이 증가한 2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보건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건복지지원	2,149	2,487	2,487	4,609	2,122	85.3
국방여성정책지원	1,037	1,037	1,037	2,984	1,947	187.8

자료: 국방부

국방여성정책지원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은 현재 23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신규로 21명 충원(14억 5,300만원 증액)하고, 간부 위주로 실시하던 4대 폭력<sup>2)</sup> 예방교육을 전 병사로 확대(4억 7,600만원 증액)하기 위한 것에 기인한다.

###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군 경력직에 대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자격을 일반지원자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성고충이라는 특화된 상담영역에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242-303

2)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2항<sup>3)</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sup>4)</sup>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법령상 총 44명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7년까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23명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2018년에 신규로 21명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충원할 계획이다.

[성고충전문상담관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국직/기타
필요인원	44	20	9	5	5	5
운영인원	23	14	4	2	3	0
2018년 충원계획	21	6	5	3	2	5

자료: 국방부

그런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군 경력자는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감안하여 지원자격 기준을 일반지원자에 비하여 완화하고 5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다.<sup>5)</sup>

- 3)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둔다.
- 4)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육군·공군 :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해병대 :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 5) 그러나 지원자격을 완화하였음에도 군 경력이 있는 상담관은 현재 근무 중인 23명 중 3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경력자의 지원이 저조하고 일반지원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자격 현황]

구분	일반지원자	10년 이상 군 경력자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자격증: 사회복지사 등 7개</li> <li>• 민간 자격증: 상담심리사 등 13개</li> </ul>	일반지원자와 동일
② 학력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경력</li> <li>• 상담·사회복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상담경력</li> <li>• 5년 이상 상담경력 보유</li> </ul>	상담·사회복지 학위소지자
③ 성(性)상담 교육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상담분야 교육 이수</li> <li>• 정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성 상담 관련기관에서 1년 이상 성 상담 경력 보유</li> </ul>	-

자료: 국방부

그러나 성고충상담전문가를 채용하는 지원자격에서 군 경력을 이유로 성 상담 교육 이수 및 성 상담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군 경력자의 성고충전문 상담관 지원 자격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가. 현황

무관부활동<sup>1)</sup> 사업은 해외 군사정보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재무관(임기 3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5.6%)이 증가한 11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예산안은 무관부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원 인건비(33억 6,300만원), 임차료(29억 200만원), 국외여비(17억 7,200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무관부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관부활동	10,773	11,186	11,186	11,808	622	5.6

자료: 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0조<sup>2)</sup>는 주재무관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2017년 9월 기준 주재무관의 정원은 75명이며, 육군 40명, 해군 18명, 공군 17명 등이다.

[주재무관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인원	75	2	38	1	17	1	16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5135-301

2)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0조(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9명이며, 다음으로 중국(6명), 일본·러시아(각 4명), 터키 등의 순이다.

[국가별 주재무관 현황]

구분	파견국 현황	비 고
미주	미국(9), 페루,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7개국 15명
구주	러시아(4), 독일(2), 프랑스, 터키(3), 영국(2), 벨기에,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17개국 24명
아주	중국(6), 일본(4), 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몽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17개국 25명
중동	이집트, 남아공,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UAE, 레바논,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란, 요르단	11개국 11명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주재무관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분석관<sup>3)</sup> 운영 비용을 동 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정보국<sup>4)</sup>에 인원 1명을 파견(24개월)하면서 해당 인원과 관련된 예산을 2008년부터 동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 2018년 관련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된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분석관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교체여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3) 국방부는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의 임무를 정보현안 관련 분석업무, 북한정세 관련 긴급 접촉채널 유지 등 이라고 설명한다.

4) 미국 국방정보국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군사 정보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정보기관이다.

[2018년도 DIA 분석관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DIA 분석관 관련	96	71	71	102	31	43.7

자료: 국방부

그런데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해당 인원과 관련된 예산안을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초 국방정보국 분석관 임무는 주미대사관 무관(위싱턴)이 겸하였으나 2008년부터 주재무관이 아닌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8년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무관부활동을 하는 주재무관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 및 효율적 운영의 이유만으로 관련 없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 가. 현황

의무시설개선<sup>1)</sup>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군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군 의료환자의 진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400만원(43.1%)이 증가한 9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의무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무시설개선	9,873	6,697	6,697	9,581	2,884	43.1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은 일동병원 리모델링 사업의 잔여사업비 63억 1,300만원(2017년 40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고, 수도병원 보강사업 등 5건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2018년도 의무시설개선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
교육단 신체검사장 신축(계속)	1,154	2017~2018	970
일동병원 리모델링(계속)	14,776	2015~2018	6,313
수도병원 보강(신규)	34,825	2018~2020	1,457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신규)	7,826	2018~2020	338
8사단 의무대 신축(신규)	4,699	2018~2020	197
교육사 의무대 리모델링(신규)	3,926	2018~2020	159
10전비 항공의무대대 증개축(신규)	2,299	2018~2019	148
합계			9,581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n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231-305

## 나. 분석의견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신규사업 5건 중 4건에서 설계비를 전액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및 「2018년도 국방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은 시설비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사업 연차별 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30억원 이하인 사업은 사업 1년차에 설계비 및 공사비의 2%,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1년차에 설계비만 9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원여건 및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등에 규정된 시설사업비의 연차별 배분기준]

총사업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0 ~ 3억원	(설계비)+(공사비 100%)	-	-
3 ~ 30억원	(설계비)+(공사비 2%)	(공사비 98%)	-
30억원 이상	(설계비 95%)	(설계비 5%)+공사비 40%	(공사비 60%)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 신규사업 5건 중 4건(수도병원 보강,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 8사단 의무대 신축, 교육사 의무대 리모델링 사업)은 모두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설계비를 95%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액(100%)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신규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	내역
수도병원 보강(신규)	34,825	2018~2020	1,457	설계비 100%
수도병원 장례식장 신축(신규)	7,826	2018~2020	338	설계비 100%
8사단 의무대 신축(신규)	4,699	2018~2020	197	설계비 100%
교육사 의무대 리모델링(신규)	3,926	2018~2020	159	설계비 100%
10전비 항공의무대 증개축(신규)	2,299	2018~2019	148	설계비 100%+공사비 2%

자료: 국방부

특히 동 사업은 설계 및 착공 지연, 시공업체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했음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사업 4건의 설계비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및 「2018년도 국방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무시설개선 사업 집행률 추이(2013~2017년 7월)]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이전용 조정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13	7,108	4,452	0	11,560	7,422	64.2	3,581	557
2014	12,076	3,581	0	15,657	10,401	66.4	3,550	1,706
2015	8,231	3,550	△1,243	10,538	7,716	73.2	2,647	176
2016	10,727	2,647	△592	12,782	9,873	77.2	2,730	179
2017. 7.	6,697	2,730	0	9,427	5,982	63.5	-	-

자료: 국방부

## 가. 현황

증/특식<sup>1)</sup> 사업은 훈련 및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의 체력보강 및 집중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경축일 특식·특수근무자증식 등 6가지로 구분<sup>2)</sup>되며,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8억 8,000만원(16.6%)이 증가한 1,25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증/특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증/특식	103,868	107,428	107,428	125,308	17,880	16.6
위탁사업비(210-15)	7,439	12,689	12,689	15,891	3,202	25.2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경축일특식의 횟수 증가(20억원)<sup>3)</sup>, 상근 예비역 증/특식 사업의 이관(123억원), 민간위탁배송지 추가(32억원) 등에 기인한다.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위탁배송 사업은 증/특식과 관련 없는 부식에 대한 배송이라는 점에서 부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본급식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코드: 일반회계 1231-302
- 2) - 경축일특식: 설, 추석, 국군의 날 지급 특식 소요  
 - 특수근무자증식: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증식 소요  
 - 기초훈련장병증식: 기초훈련장병에게 지급하는 증식 소요  
 - 영내자증식: 월 9회 사병에게 지급하는 증식  
 - 생일특식: 영내대기 하사이하 장병 대상으로 생일에 지급하는 특식  
 - 군외급식보조 등 기타: 격오지 등 소규모부대 현지 부식구매 및 영외급식에 따른 부족소요 확보 등
- 3) 현재는 설날, 추석, 국군의 날에만 지급되나 2018년부터는 3.1절, 제헌절, 광복절이 추가됨에 따라 현 3회에서 6회로 증가할 예정이다.

동 사업 내 위탁사업비(210-15목)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배송 사업은 급양대 등으로 부터 편도 40km 이상 떨어진 지역 및 해안소초 등에 부식을 배송할 때 군 차량이 아닌 민간 냉장유통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장병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배송지 추가에 따라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100만원 증액된 158억 9,100만원이 편성 되었다.

[2018년도 민간위탁배송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민간위탁배송 산출내역	기존: 70,717명 × 550원 × 350일 = 13,613백만원 신규: 15,745명 × 550원 × 263일 <sup>4)</sup> = 2,278백만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현재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배송 물품은 증/특식이 아닌 부식으로 동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장병의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기본급식<sup>5)</sup>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배송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급식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4) 신규 민간위탁배송은 261일분인데 이는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코드: 일반회계 1231-301

### 가. 현황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사업은 대학과 군이 협약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사관에게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계발교육<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350.0%)이 증가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자기계발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기계발교육	13,725	10,540	10,540	10,994	454	4.3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	74	100	100	450	350	350.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문학사시스템은 1~2학년 과정만 가능하며, 이를 전공심화과정(3~4학년)의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메뉴 등의 개발을 위해 2018년 3억 5,0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sup>2)</sup>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전공심화과정(3~4학년)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메뉴 개발에 있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문학사 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교육부와 2017년 1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 7개 대학이 전공심화과정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각 대학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콘텐츠는 10월, 시스템은 연말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432-308

2) 1억원은 기 개설된 전문학사시스템의 운영비이다.

국방부는 2018년 1월부터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핵심메뉴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3월부터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 입찰공고, 업체선정, 최종 계약까지의 일정이 최소 4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월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최소 2월 이후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에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메뉴 개발은 빨라야 2월말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3월에 시작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공심화과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메뉴개발 사업 계획]

구분		기간
계약관련	입찰공고	4주
	업체선정심의	
	업체계약	
핵심메뉴개발	관리자, 사용자 메뉴 등	4주
총 기간		8주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메뉴 개발과 관련된 입찰공고·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및 개발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공심화과정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현황

예비전력운영지원<sup>1)</sup> 사업은 예비군 관리를 위한 중대 운영, 교육훈련지원, 훈련장비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3,900만원(△5.2%) 감액된 317억 5,100만원이다.

[2018년도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비전력운영지원	26,656	33,490	33,490	31,751	△1,739	△5.2
예비군 스마트훈련 관리체계 구축	788	0	0	1,893	순증	순증

주: 2016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예비군훈련장 과학화장비 도입의 연차별 예산 소요에 따른 감액(△9억원), 지역예비군 부대운영유지 비용 감소(△1,400만원), 예비군 간부인원 감소(△1,100만원) 등에 기인한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대의 효율적인 예비군자원관리, 실시간 평가체계의 구축 등 예비군훈련의 관리시스템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18억 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화훈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1억 9,300만원, 피산 예비군 훈련대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 6억 6,800만원 및 옥천과 충주 예비군훈련대 스마트 훈련관리체계 구축에 각각 5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sup>2)</sup>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632-305

2) 피산(C형)과 옥천·충주(D형)의 예산액이 다른 것은 예비군훈련대의 규모 차이에 따라 도입기기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도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예산안
과학화훈련관리시스템 SW	193
괴산 예비군훈련대(C형)	668
옥천 예비군훈련대(D형)	516
충주 예비군훈련대(D형)	516
합계	1,893

자료: 국방부

괴산, 옥천, 충주 예비군훈련대 예산(17억원) 중에는 손목에 착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sup>3)</sup> 관련 예산이 2억 3,100만원(개당 21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4)</sup>

#### 나. 분석의견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도입은 비용과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스마트훈련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예비군이 입소 등록할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자동·전산화하여 신속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훈련정보를 제공하여 예비군훈련의 집중도와 적극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국방부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56사 금곡훈련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결과 예비군과 교관 및 조교 모두 종합평가에서 발전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만, 웨어러블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방부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훈련 입·퇴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군의 실시간 위치확인을 통해 무단이탈 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과제훈련장별 예비조의 대기인

3)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에 착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기기로 스마트워치와 유사하다.

4) 그 외에도 훈련장 종합관제시스템의 구성이 되는 CCTV, LED TV, 서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수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순환식 훈련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퇴소 절차, 무단이탈 통제, 대기인원 파악을 굳이 개당 21만원 상당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웨어러블 기기는 도입 이후 유지보수와 신규제품 구매가 필요할 것이므로, 초기 도입비용 이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6개월 간의 시범사업<sup>5)</sup> 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충전 불량, 배터리소모 과다, 버튼훼손 등의 고장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6)</sup>

셋째, 국방부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를 손목시계형으로 도입하였으나, 손목 착용 등에 따른 불편함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되는 등 전체 응답자의 12%가 웨어러블 기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비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시스템 및 장비운용 부분)]

(단위: %)

구분	유용하고 편리	보완 필요	차이 없음
입(퇴)소 시스템	98	2	0
웨어러블 기기	85	12	3
종합정보제공	90	9	1

자료: 국방부

5) 시범사업은 6개월간 진행되었으나, 대통령선거기간(3주)과 혹서기(2주)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실제 훈련 기간은 5개월 정도이다.

6) 전체 운용 수량 1,000대 중 38대에서 고장사례가 발생하였다.

## 가. 현황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sup>1)</sup> 사업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억 4,500만원 증액된 12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240	2,402	2,402	12,447	10,045	418.2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건설보상비가 전년 대비 75억원, 공사비·감리비 등이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예산	2018예산안
국내여비(220-01목)	1	0
건설보상비(410목)	2,401	9,900
공사비(420-03목)	0	2,335
감리비(420-04목)	0	210
시설부대비(420-05목)	0	2
합계	2,402	12,447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n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341

## 나. 분석의견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는 광주 군 공항 근처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논의되면서 국방부가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2억원 규모이다. 국방부는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근처로 이전할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sup>2)</sup>이 추진되면서 국방부는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 2017년에는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보상비만 24억원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탄약고 공사 착수가 어렵고, 설사 공사를 착수한다 하더라도 이전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주 협상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2018년에 편성된 공사비가 집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므로, 공사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하여 2017년 현재 광주시가 예비 이천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가. 현황

육군 부대개편3차<sup>1)</sup>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되는 23개 부대 구조개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166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육군 부대개편3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육군 부대개편3차	0	0	0	16,606	16,606	순증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육군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부대개편1차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1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기계화사단, 37사단, 52사단, 55사단을 개편하는 것이고, 육군 부대개편2차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26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3군단 3개 직할부대, 7군단 5개 직할부대, 2사단 3개 직할부대, 8사단, 20사단, 51사단 167여단, 56사단, 1·2·3·5기갑여단, 20기보여단, 특임여단을 개편하는 것이다.

육군 부대개편3차 사업은 총사업비 3,712억 3,700만원 규모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3군단 2개 직할부대, 7군단 3개 직할부대, 1군단 2개 직할부대, 수도군단, 51사단 2개 여단, 30기갑여단, 17·12사단·홍천병원<sup>2)</sup> 등이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166억 600만원으로, 비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조사설계비 77억 7,100만원, 실시설계비 77억 1,900만원, 공사비 10억 6,100만원, 감리비 5,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472

2) 홍천병원 부대개편의 경우 일반회계의 의무시설개선사업에서 이관됨에 따라 2년차 예산(공사비)을 편성하였다.

[육군 부대개편3차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예산안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7,771
실시설계비(420-02목)	7,719
공사비(420-03목)	1,061
감리비(420-04목)	53
시설부대비(420-05목)	2
합계	16,606

자료: 국방부

부대별로는 홍천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대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로는 홍천병원이 17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7사본부·직할대·102여단·군수지원대대, 3군지여단 총포차량정비대대 등의 순이다.

[육군 부대개편3차 사업 부대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반영 사항	2018 예산안
3군지여단 총포차량정비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1,185
3군단 603수송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915
7군단 강습2·정보·경비·방공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604
7군단 통신단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561
7군단 교량 1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365
1군지여단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365
1군단 기동헬기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416
수도군단 표적획득포대, 방공단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445
수도군단 포병여단·항공단·화생방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939
51사단 168여단 예비군훈련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918
51사단 169여단 예비군훈련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708
30기갑여단 본부, 직할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715
30기갑여단 전투근무지원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823
17사본부·직할대·102여단 군수지원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1,734
17사단 100여단 군수지원대대·포병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680
17사단 표적획득포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130
12사단 사령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998
12사단 정보·전차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732
12사단 방공·화생방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291
12사단 일반지원대대·37여단 군수지원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646
12사단 51여단 군수지원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314
12사단 52여단 군수지원대대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360
홍천병원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부대비	1,762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육군 부대개편 3차사업은 과거 육군 부대개편 1차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첫 해에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15년 육군 부대개편 1차사업의 첫 해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115억 1,500만원 중 66억 6,2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하고 13억 5,700만원은 이월하는 등 6억 9,6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부진(6.0%)하였다.<sup>3)</sup>

[육군 부대개편1차 사업 첫 해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B)	집행률(B/A)
육군 부대개편 1차	11,515	6,920	4,853	1,357	301	696	6.0
수기사 개편	2,532	△1,574	958	952	5	1	0.0
37사단 개편	1,267	129	1,396	405	296	695	5.5
55사단 개편	7,716	△5,217	2,499	0	0	0	32.4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기사 개편과 55사단 개편의 경우 건립소요 추가에 따라 총사업비 재검증이 필요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37사단 개편은 사업 수정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제출이 지연되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부대개편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진행되므로, 첫 해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향후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 등을 참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부대개편 2차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집행률은 45.5% 수준(160억 6,700만원 중 73억 1,800만원 집행)으로 1차사업보다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설계의 연내 미종료 등에 따른 이월액과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 등은 현재 상황에서 파악이 어려워 전체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대한 분석이 제약된다.

## 가. 현황

국군외상센터<sup>1)</sup> 사업은 국군원주병원과 국군부산병원의 외상치료기능을 국군수도병원<sup>2)</sup>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3,600만원(229.5%) 증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군외상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군외상센터	0	2,194	2,194	7,230	5,036	229.5

자료: 국방부

국군외상센터 사업의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건물 1동(10,973m<sup>2</sup>)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7년에 신규로 반영되어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 2년차인 2018년의 경우 본격적인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반영되었다.<sup>3)</sup>

[국군외상센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기본조사설계비	1,364	0
실시설계비	830	0
공사비	0	6,299
감리비	0	919
시설부대비	0	12
계	2,194	7,230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463
- 2) 국군수도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하고 있다.
- 3) 국군외상센터 사업과 관련한 설계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2018년 착공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공사비 연부율(20%)보다 많은 감리비 연부율(5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감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함에 있어 공사비의 경우 총 공사비에 20% 연부율을 적용하여 62억 9,900만원을, 감리비의 경우 50% 연부율을 적용하여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 [2018년 국군외상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산출 근거]

- 공사비(6,299백만원)
  - 총 공사비(31,493백만원) x 20%(연부율) = 6,299백만원
- 감리비(919백만원)
  - 총 감리비(1,838백만원) x 50%(연부율) = 919백만원

자료: 국방부

그러나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감리비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공사비와 같은 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공사비와 감리비의 연부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 감리비는 공사비와 동일한 연부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5억 5,100만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민군기술협력(R&D)<sup>1)</sup> 사업은 민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군수품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35억 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민군기술협력(R&amp;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군기술협력(R&D)	-	-	-	3,559	3,559	순증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7조<sup>2)</sup>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sup>3)</sup>에 출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은 계속과제 2개<sup>4)</sup>와 신규과제 11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며, 11개 신규과제와 관련된 민간기술수준 조사가 2017년 10월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코드: 일반회계 2341-400
-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방위사업청이 출자해 설립하였으며, 2006년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방기술에 관한 조사와 분석,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 4) 계속과제는 성능이 향상된 방탄헬멧 개발(3.9억원)과 휘어지는 태양광 충전장치 개발(2.44억원)로,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하던 사업에 국방부가 신규로 참여하게 되어 동 사업이 신규사업임에도 계속과제가 포함되었다.

[2018년 민군기술협력(R&D)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과제	예산안
계속과제 (6억 3,400만원)	성능이 향상된 방탄헬멧 개발	390
	플렉서블한 휘어지는 태양광 충전장치 개발	244
신규과제(안) (27억 7,500만원)	긴급 팽창식 구멍의 국산화 개발	290
	경량화 지뢰보호의 세트 개발	320
	난연·발수 기능이 강화된 함상복 개발	250
	난연·미끄러짐 방지기능을 가진 함상화 개발	155
	화생방 상황에서도 운용가능한 소형 기동 정수장비 개발	333
	레이저 방호 가능한 방탄 특수안경 개발	250
	지휘소용 다기능 대형천막 개발	200
	전차·장갑차용 난연 승무원복 개발	300
	대형 특수엔진 인젝트 측정기 국산화 개발	230
	금속·비금속 결합 점검용 초음파 탐지기 국산화 개발	252
궤도 및 구동축 조립용 극저온 냉각장치 국산화 개발	195	
연구기획 및 개발관리·평가비		150
총계		3,559

자료: 국방부

이를 위해 국가기술품질원은 국방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실을 2017년 12월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이하 “센터”)로 개편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의 기획과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상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에도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보증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리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내 센터에서 품질보증 업무와 연구개발 사업관리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국방부는 신규과제 11개와 관련된 2018년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사업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구과제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과제 2건의 경우에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sup>5)</sup>

그러나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소요액과 연구개발 기간 등이 대략적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는 현재 11개 과제(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년 사업 시행계획 확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과제의 2018년 사업시행계획이 명확히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 이행 전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 성능이 향상된 방탄헬멧 개발: 총 13억 1,000만원(2016년 5.2억원, 2017년 4억원, 2018년 3.9억원)  
- 휘어지는 태양광 충전장치 개발: 총 7억 3,400만원(2016년 2.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2.44억원)

### 가. 현황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39조<sup>1)</sup> 및 제39조의2<sup>2)</sup>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국가부담금과 보전금을 전출하고 있으며,<sup>3)</sup> 2018년 예산안은 국가부담금 1조 976억 4,300만원과 보전금 1조 5,100억원 등 총 2조 6,076억 4,300만원이다.

#### [2018년도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2,399,310	2,504,619	2,504,619	2,607,643	103,024	4.1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타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기여금 대비 연금수급액이 높아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 직역연금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8년 1조 5,100억원인 보전금의 규모는 연평균 4.8% 증가하여 2045년에는 5조 4,5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간부증원계획을 반영한다면 보전금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군인연금법」

제39조(부담금)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3) 코드: 일반회계 8101-882

4) 국방부는 2015~2019 중기계획에 계획된 간부증원만을 보전금 추계에 반영하고, 2020~2024년까지의 간부

[군인연금의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안)
일반회계전입금	2,166,391	2,258,052	2,329,600	2,332,718	2,399,310	2,504,619	2,607,643
국가부담금	916,442	888,864	956,317	989,623	1,032,773	1,038,887	1,097,643
보전금	1,249,603	1,369,188	1,373,283	1,343,095	1,366,537	1,465,732	1,510,000

자료: 국방부

또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2020년까지 9%로 확대하고 연금수급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기여율을 7%로 유지하고 연금도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수급할 수 있다.

그 결과, 2016년 군인연금의 1명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02만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5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명당 기여금 납부액이 연간 385만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33만원이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2016년말 기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	182,721명	1,107,972명
	기여금 수입	5,510억 8,700만원	4조 2,614억 1,200만원
	1인당 기여금	302만원	385만원
퇴직연금	수급자 수	67,586명	396,743명
	퇴직연금 지급	2조 679억 2,100만원	11조 1,059억 500만원
	1인당 퇴직연금월액	255만원	233만원

자료: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따라 조기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워 직업안정성이 낮은 군인의 특징과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보상적 성격을 갖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sup>5)</sup>

따라서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역연금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증원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5)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로,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4~17년 앞서 퇴직하게 된다.

### 가. 현황

전쟁기념사업회 사업<sup>1)</sup>은 국방부가 전쟁기념사업회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과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8,000만원(△12.9%)이 감액된 9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부 시설공사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sup>2)</sup>

[2018년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쟁기념사업회	10,080	10,683	10,683	9,303	△1,380	△12.9

자료: 국방부

### 나. 분석의견

전쟁기념사업회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비, 사업비 항목에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건비 항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정규직 76명(신규채용에 따른 증원 1명 포함),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24명, 용역근로자 71명 등 총 176명의 인력운용비용이 편성되어 있다. 이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2435-302

2) 평화의 광장 보수 완료(△17억 9,200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완료(△4억 4,300만원), 전시실 개선 사업(△5억원) 등

중 무기계약직 5명의 비용은 내역사업 중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항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념관 계약직 3명은 기관운영비에, 어린이박물관 운영직 2명은 사업비 항목에 있다. 사업회의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에서도 해당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각각 기관운영비(기념관운영, 216목)와 사업비(어린이박물관운영, 404목)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다.

[2018년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 예산안 중 인건비 관련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예산안	인건비 관련 세부사항	
전쟁기념사업회	9,303	총 176명	
- 인건비	4,211	76명	○ 정규직 76명
- 기관운영	600	24명	○ 기념관 계약직 16명 -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13명) ○ 기념관 안보해설사 8명 - (기간제 8명)
- 사업비	4,492	76명	○ 어린이박물관 운영 계약직 5명 -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3명) ○ 경비·청소 등 용역근로자 71명

자료: 국방부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 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 비목 내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sup> 기타공공기관인 사업회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념관 및 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은 정부 수탁사업이 아닌 사업회 고유사업이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비 등 다른 비목에 편성할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매년 인건비·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시하고 있는데, 사업회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경상운영비 또는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인건비 항목 금액은 적게 공시되고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항목은 높게 공시되는 부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8.

따라서, 해당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 또는 사업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은 위  
지침에 어긋나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정확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인건비 내역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방위사업청

(73~130 비공개)





병무청



## 1

## 현황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세입 예산안은 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20.4%) 증가하였다. 병무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8	206	206	248	42	20.4

주: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207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원 (0.1%) 증가하였다. 병무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6,178	220,129	220,446	220,759	313	0.1

주: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사회복지무요원운용사업이다. 사회복지무요원운용 사업은 사회복지무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다.

[병무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개)	사회복지무요원운용	1,289	1,289	1,793	504	39.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병무청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은 ①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 ② 현역병 입영 등 병력의 적정 충원, ③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의 원활한 지원, ④ 공정한 병역 이행 및 병무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병무청은 입영 후 귀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검사비, 병무용진단서 발급비, 여비 등의 예산 소요와 학업, 구직 등의 지연,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 시행에 앞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2,084개 업체)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미회신율이 7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입영 후 귀가인원 증가 문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사단 훈련소에 입영한 후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에서 현역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귀가 조치되는데, 최근 관련 인원이 증가 추세이다. 2013년의 경우 7,093명 수준이었던 해당 인원이 2016년에는 1만 7,5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도 상반기에만 6,316명이 귀가 조치되었다.

[입영인원 및 귀가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기준)
입영인원	263,264	281,650	260,668	278,780	134,096
귀가인원	7,093	7,358	11,191	17,577	6,316
비중	2.7	2.6	4.3	6.3	4.7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귀가인원의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 소요 및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귀가인원 증가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후 재학연기 등으로 입영 시까지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2015년 이후 1·3군 보충대 해체됨에 따라 복무할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여 각 부대가 복무 부적합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적체에 따라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한 것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복무 부적합자가 입영하지 않도록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나,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 조치되는 인원이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귀가 조치 이후 재신체검사 등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당사자의 재입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역병입영자가 귀가 조치되는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치유기간을 통보 받는데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와 치유기간이 없는 경우는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입영하게 된다.

[귀가인원 별 향후 조치 사항]

구 분	향후 조치
치유기간 3개월 이상자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입영
치유기간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

자료: 병무청

이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민간병원 위탁검사비, 병무용진단서 발급비, 수검복 세탁비, 재료비(검사시약비), 의료폐기수수료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며, 향후 재입영시 여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등 귀가인원이 증가할수록 병무청의 예산 소요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귀가대상자도 전역 후 학업이나 구직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입영하였으나 귀가조치로 인하여 입영이 지연되는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가인원이 확대될수록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입영 후 귀가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병무청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병역법」 제77조의4<sup>1)</sup>에 따라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정병역제도”)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도 예산안은 병무행정운영<sup>2)</sup> 사업에 2억 1,500만원, 병무행정정보화 사업<sup>3)</sup>에 4억 1,800만원 등 총 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공정병역제도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정병역제도 관련	0	0	0	633	633	순증
병무행정운영	0	0	0	215	215	순증
병무행정정보화	0	0	0	418	418	순증

자료: 병무청

병무행정운영 사업에는 공정병역제도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에는 공정병역제도 시스템 구축 비용이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었다.<sup>4)</sup>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2) 코드: 일반회계 7134-317

3) 코드: 일반회계 7138-501

##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 대상자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명단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정병역제도를 통해 해당 대상자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들에 대한 명단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sup>5)</sup>, 병무청은 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 11만 3,982명(4,098개 기관 소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소득자, 체육선수 등의 경우 국세청과 체육협회·구단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이 용이하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명단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병무청이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보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2,084개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결과 업체의 관심 부족과 폐업, 주소지 변동 등으로 미회신율이 75%에 이르고 있어 동 사업이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사업 추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관련 정보 회신 현황(2017.8.)]

전체	회신	미회신
2,084개	511개(25%)	1,573(75%)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병역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공정병역제도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5)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기타 인원은 연 1회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국외체재인원 실태조사의 사업효과 제고 필요

#### 가. 현황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사업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의 복무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서면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산업지원인력<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감액된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산업지원인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지원인력	348	326	326	310	△16	△4.9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245	235	235	234	△1	△0.4
국외업무여비	25	25	25	24	△1	△4.0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현역병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sup>2)</sup>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말 기준 전문연구요원 6,665명, 산업기능요원 25,163명, 승선근무예비역 3,374명 등 총 35,202명이 산업지원인력으로 복무하고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434-309

2)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 이상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하여 해운·수산업체에 승선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지원인력 복무 현황(2017년 7월)]

(단위: 개소, 명)

구분	지정업체 수	복무인원
계	8,514	35,202
전문연구요원	1,811	6,665
산업기능요원	6,542	25,163
승선근무예비역	161	3,374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방문조사는 체재인원의 10% 수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원격실태조사는 현지책임관의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보이므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sup>3)</sup>, 병무청은 3개월 이상 체류자를 국외체재 실태조사 대상인원(이하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인원은 2017년 7월 기준 총 171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45명, 중국과 독일이 각각 19명, 베트남 16명, 일본 15명 등의 순이다.

3) 「병역법 시행령」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현황(2017년 7월)]

(단위: 명)

합계	미국	유럽					아시아					기타
		소계	독일	스위스	프랑스	기타	소계	중국	베트남	일본	기타	터키 등
171	45	56	19	11	9	17	61	19	16	15	11	9

자료: 병무청

국외업무여비는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복무규정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병무청은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의 출장지역·기간·인원, 예산, 분기별 원격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국가 및 시기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시한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대상인원의 10% 수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현황(2012~2016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출장국가	체재 인원	대상 인원	적발 인원	집행액
2012년	미국	172	10	-	25,205
	유럽 (독일, 벨기에, 스위스)		3		
2013년	중국	153	7	-	3,488
2014년	미국	186	12	-	22,861
	일본		5		
2015년	미국	169	13	3	28,179
	유럽 (영국, 독일)		4		
2016년	미국	178	12	-	24,715
	유럽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5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사업목적이 국외체재자 산업지원인력 복무부실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실제 5년간 실태조사 중 적발인원은 2015년 3명으로 병무청 직원이 직접 해외로 출장을 가는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무청은 2016년부터 국내에서 E-mail을 활용하여 현지책임관<sup>4)</sup>인 지도교수

4) 현지책임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산업지원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등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정하며, 허가 목적에 따라 업무출장인 경우 현지직원,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원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근무상황, 업무수행(연구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전체 원격실태조사 대상자 37명 중 24명(64.9%)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의 실태조사에 대한 제도 재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실태조사의 경우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책임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수 등이 현지책임관으로 지정된다.

## 가. 현황

복무관리 등 여비 사업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로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복무관리 등 여비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1,373	1,363	1,363	1,339	△24	△1.8
복무관리 등 여비	500	500	500	499	△1	△0.2
국외업무여비	69	77	77	76	△1	△1.3

자료: 병무청

복무관리 등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는 사회복지요원 중 국외영주권자에게 제공하는 휴가비,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여비(6,000만원)와 외국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여비(1,600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7,600만원이다.

## 나. 분석의견

병무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 대체복무제도 자료조사 및 연구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관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입영 및 징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인정국가의 제도 도입배경, 도입 후 현 상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n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그런데 동 사업은 사회복지요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복무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제도 운영 등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세부 사업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도 관련 출장 현황(2013~2016년)]

연도	기 간	출 장 국 가	예산/집행(천원)	인원
2013	9.2. ~ 9.9.	독일, 스위스	27,989/18,214	3명
2014	영주권자 항공료 지급 우선으로 대체복무 국외출장 없음 <sup>2)</sup>			
2015	10.26. ~ 11.6.	핀란드, 에스토니아	25,599/18,045	4명
2016	6.19. ~ 6.30.	오스트리아, 덴마크	23,367/18,186	4명

자료: 병무청

2) 2014년의 경우 국외영주권자 휴가비 지원 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해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채미강 예산분석관  
조흥연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519-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